

기상청 슈퍼컴퓨터 공동활용 운영 지침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상청 슈퍼컴퓨터의 공동활용 절차와 사용자 지원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기상청 슈퍼컴퓨터 공동활용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 및 사용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활용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0목과 관련하여 기상청 슈퍼컴퓨터 전산자원 일부를 기상청 산하기관 및 기상업무 관련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시스템을 말한다.
2. “시스템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란 공동활용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하고자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자 계정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3. “시스템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라 함은 공동활용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장을 말한다.

제 2 장 공동활용 사용자 및 시스템 관리

제4조(공동활용 대상) ① 시스템 공동활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구환경시스템 및 대기과학 분야 정부·공공기관, 대학에서 기상업무와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슈퍼컴퓨터가 필요한 자

2. 기상청 연구개발 사업자로 선정되어 과제수행을 위해 슈퍼컴퓨터가 필요한 자

3. 기상청 산하기관

4. 기타 공동활용 심의위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대상자는 제외한다.

1. 연구개발 용역사업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의 슈퍼컴퓨터 또는 서버 급 전산장비 사용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기상업무 연구개발 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제한업체 및 소속 연구자

3. 기상청 연구개발 사업수행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

제5조(사용신청 방법) ① 시스템 사용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동활용 신청서 및 제2호 보안서약서 서식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의 최대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공동활용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1년을 초과할 수 있다.

③ 기상청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경우 사업수행기간을 시스템 사용기간으로 한다.

제6조(사용 승인) 관리자는 사용신청서를 검토하여 처리한다, 단, 제15조에 따라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사용 통보) 관리자는 시스템 사용이 승인되면 계정명과 시스템

자원의 할당내역 등을 해당기관 또는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 배정과 우선순위) ① 사용자에게 대한 자원할당은 공동 활용 운영계획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용자의 추가적인 자원요청이 있거나, 자료처리의 우선순위를 높이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상정하여 재조정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시스템 자원이 부족한 경우 사용자별 할당 자원의 조정을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용자별 자원 분배량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배정받은 자원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시스템 운영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과부하를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자신의 작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자신의 프로그램을 최적화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 프로그램의 비효율적 사용에 대한 관리자의 수정 권고가 있을 시 반드시 따라야 한다.

③ 사용자는 부여받은 계정과 비밀번호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연구 또는 개발된 결과를 논문, 학술발표회, 기타 형태로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기상청 슈퍼컴퓨터를 사용하여 얻은 결과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내용이 기록된 논문, 발표초록 등의 사용실적을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사용법을

숙지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는 시스템 사용 기간 만료가 도래하기 전 시스템의 사용자 자료 일체를 백업받아야 한다. 사용기간 만료 30일 경과 후 관리자는 자료를 삭제하여 자원을 재활용 한다.

제10조(사용자계정의 해지사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자 계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시스템의 사용목적을 달성한 때
2. 시스템사용신청서 상의 사용요청기간이 만료된 때
3. 별도의 사유 없이 60일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때
4. 신청서의 내용과 상이한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5. 허가받지 않은 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계정을 양도하는 등 보안정책을 위반한 때
6.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7. 기타 사용자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공동활용 심의위원회에서 해지를 결정한 때

제11조(관리자의 책무) 관리자는 사용자의 비효율적인 시스템 사용이나, 전산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작업 발견 시 수정 조치한다.

~~~~~ **종락** ~~~~~

### 제 3 장 공동활용 심의위원회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공동활용시스템의 자원관리, 사용자관리, 자료처리 및 사용 우선순위 등의 심의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는 공동활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이상 10명 이하로 하고, 위원장은 관측기반국장이 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③ 위원은 각 국의 주무부서장과 정보시스템 운영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추가할 수 있으며, 간사는 국가기상슈퍼컴퓨터 운영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심의, 의결한다.

1. 공동활용 시스템 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공동활용시스템을 최초로 사용하고자 하는 신규 및 기존 사용기관 내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시스템 사용 타당성 검토
3. 공동활용시스템 사용자의 자원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가 기상업무 발전을 위해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 중 사용자 계정발급, 저장장치의 사용자 할당 등 정기적인 변경사항이나 위원장이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관리자에 위임할 수 있다.

~~~~~ 중략 ~~~~~

제 4 장 사용자 기술지원 및 인력양성

제20조(기술지원) ① 사용자는 기상청 공동활용 시스템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요청한다.

② 관리자는 사용자 기술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후 기술지원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사용자 기술지원을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실시한다.

③ 기술지원 신청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사용자 프로그램의 컴파일 오류 수정
2. 사용자 프로그램 구동을 위한 라이브러리 설치
3. 사용자 프로그램 오류 해결

④ 제3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의결한 후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1. 관리자가 기술지원의 대상 작업이 광범위하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판단한 때
2. 기상청 연구개발 용역 관련 기술개발 및 최적화에 관련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21조(인력양성) ① 관리자는 슈퍼컴퓨터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매년 연간 슈퍼컴퓨터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 과정별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활용 사용자 교육과정
2. 포트란 프로그래밍 교육과정
3. 병렬 프로그래밍교육과정

③ 교육훈련의 진행방법은 강사,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을 포함한 과정별 운영계획에 따라 수준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집합교육을 기본으로 하되 교육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 5 장 보칙

제2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슈퍼컴퓨터운영관리지침에 따른다.

부 칙 <2016.6. >

제 1 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슈퍼컴퓨터 공동활용 사용 신청서 | | | |
|--------------------------|--------------------------------------------------------------------------------------------|-----------|-----------------------------------|
| 사용자 정보 | | | |
| * 사용자명 | 홍길동 | * 회사명/부서 | APEC기후센터/모델운영팀 |
| | | * 학교/연구실 | 서울대 / XXX 교수연구실 |
| * 전화번호 | 010-0000-1111 | * 직급/직위 | 연구원 |
| * E-Mail 주소 | aaa@korea.kr | * 사용 기간 | 2015.1.1. ~ 2015.12.31.(최대1년) |
| 프로그램 정보 | | | |
| * 사용 목적 | 사용 목적은 가능한 최대한 상세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슈퍼컴퓨터를 사용해서 수행하는 연구의 목적 - 연구 수행에 따른 기대 효과 | | |
| * 사용 프로그램 (수치모델) | 모델명/버전 | | |
| | 모델해상도 | | |
| | 소요전산자원 | | |
| | 자료생산량 | | |
| | 모델수행시간 | | |
| * 사용자의무 및 계정해지 사유 | 공동활용 사용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서 뒷면의 사용자의 의무와 계정 해지 사유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 | |
| * 개인정보 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 | |
| 신청 정보 (계정) | | | |
| * 신청 종류 | 신규 (<input type="radio"/>) | | 기간연장 (<input type="checkbox"/>) |
| * 가상사설망(VPN) ID | (1안) aaaaa | (2안) bbbb | |
| * 슈퍼컴(우리) 계정 | (1안) aaaaa | (2안) bbbb | |
| 처리 내용 | | | |
| 가상사설망 계정 | 미정 | 슈퍼컴퓨터 계정 | 미정 |

[* 필수입력정보]

위와 같이 슈퍼컴퓨터 공동활용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신청일자 : 년 월 일

신청자 : 홍길동 (인)

※ 추가 제출서류 : 연구계획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 [공동활용사용자의 의무 및 사용자 계정해지 사유 안내] | |
|-------------------------------------------|-----------------------------------------------------------------------------------------------------------------------------------------------------------------------------------------------------------------------------------------------------------------------------------------------------------------------------------------------------------------------------------------------------------------------------------------------------------------------------------------------------------------------------------------------------------------------------------------------|
| 사 용 자 의 무 사 항 | <p>① 사용자는 배정받은 자원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시스템 운영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시스템에 과부하를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p> <p>② 사용자는 자신의 작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자신의 프로그램을 최적화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 프로그램의 비효율적 사용에 대한 관리자의 수정 권고가 있을 시 따른다.</p> <p>③ 사용자는 부여받은 계정과 비밀번호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p> <p>④ 사용자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연구 또는 개발된 결과를 논문, 학술발표회, 기타 형태로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기상청 슈퍼컴퓨터를 사용하여 얻은 결과임을 명시하고, 이 내용이 기록된 논문, 발표초록 등의 사용실적을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에 제출한다.</p> <p>⑤ 사용자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사용자매뉴얼을 숙지하고 사용한다.</p> <p>⑥ 사용자는 시스템 사용 기간 만료가 도래하기 전 시스템의 사용자 자료 일체를 사용자 개인 또는 기관 저장장치로 이전하여 저장 한다. 사용기간 만료 30일 경과 후 관리자가 자료를 삭제여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p> |
| 사 용 자 계 정 해 지 사 유 | <p>사용자에게 부여된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시 해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스템의 사용목적을 달성한 때 2. 시스템사용신청시 요청한 사용기간이 만료된 때 3. 별도의 사유 없이 60일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때 4. 신청서의 내용과 상이한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5. 허가받지 않은 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계정을 양도하는 등 보안정책을 위반한 때 6.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7. 기타 사용자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공동활용 심의위원회에서 해지를 결정한 때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
|------------------------------|-------------------------------------------|
| 수집·이용 목적 | 슈퍼컴퓨터 사용자 계정 발급 및 시스템 지원 |
| 수집·이용 항목 | 성명, 부서/회사명, 전화번호, 직급/직위, 이메일 주소, 사용목적, ID |
| 보유·이용 기간 |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슈퍼컴퓨터 사용 희망 기간(기본 5년) |
|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슈퍼컴퓨터 계정 발급 및 사용자 지원 불가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

가상사설망 이용 보안서약서 및 신청서

1. 본인은 가상사설망 사용과 관련, 기상청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수행하는 소관 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을 포함하는 국가사무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과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원격접속도구는 분실.파손 및 비 허가자에 대한 대여와 공동사용의 금지는 물론, 계정 누설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원격접속도구 분실 시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업무변경.인사이동.퇴직 등 신분변동 상황 발생시에는 즉각 반납 조치한다.
5. 원격접속도구 사용 PC에 대해서는 업무자료 저장금지 원칙을 준수하며,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기상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기상청 가상사설망운영지침』을 따른다.
6.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국가보안법」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본인은 가상사설망을 사용함에 있어 위 내용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아래와 같이 사용 신청을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
| 사용자 | 용도 : 슈퍼컴퓨터 공동활용시스템 이용 |
| | 로그인 ID : |
| | 소속 : 직위(직급) : 이름 : (인) |
| 확인자 | 소속 : 직위(직급) : 이름 : (인) |

